

수도사업소

민 원 사 무 목 록

연번	처리부서	민 원 사 무 명	처리일수
1	수도사업소	저수조청소업 개설(변경)신고	7일
2	수도사업소	저수조청소업 휴업(폐업)신고	7일
3	수도사업소	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(변경설치) 신고	7일
4	수도사업소	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신청(변경)신고	7일
5	수도사업소	분뇨수집·운반업 사업계획서	30일

저수조청소업 개설(변경) 신고

사무내용	저수조청소업 개설·변경 신고			상 단
민원처리 부 서	수도사업소	접 수 처	수도사업소	
전화번호	061)860-6677	처리기간	7일	
관련법규	1. 수도법 제 34조 1항(저수조청소업의 신고) 2. 수도법 시행규칙 제 23조 2(저수조청소업의 신고)			
구비서류	1. 개설신고의 경우 가.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. 변경신고의 경우 가.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1부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		
업무처리 흐름도	○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·검토·조사(수도사업소) → 통보			
수수료	없 음			
심사기준 및 기타	○수도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2제 1항관련 [별표 7의2] -저수조청소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			

■ 수도법 시행규칙[별지 제6호의4서식] <개정 2020. 11. 27.>

저수조청소업 개설
 변경 **신고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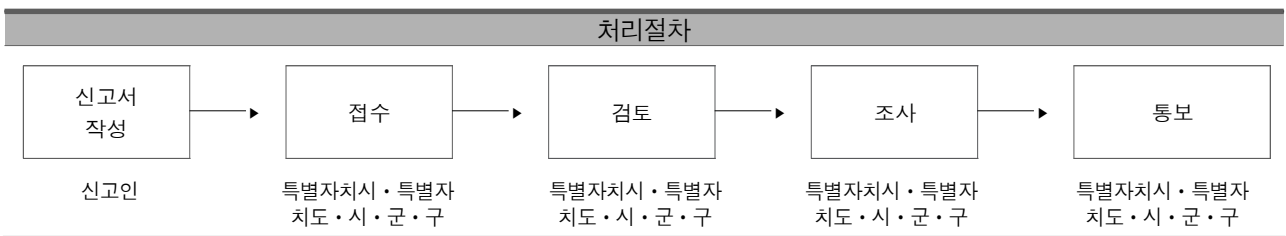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7일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사업장	상호	전화번호
	소재지	
개설(변경) 연월일		
개설(변경) 내용		
변경사유		

「수도법」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
 개설 을 신고합니다.
 변경

 년 월 일
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1. 개설신고의 경우 가.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. 변경신고의 경우 가.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저수조청소업 폐업(휴업) 신고

사무내용	저수조청소업 폐업·휴업 신고			상단
민원처리 부 서	수도사업소	접 수 처	수도사업소	
전화번호	061)860-6677	처리기간	7일	
관련법규	1. 수도법 제 34조(저수조청소업의 신고) 제 3항 2. 수도법 시행규칙 제 23조의2(저수조청소업의신고)			
구비서류	신고서			
업무처리 흐름도	○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수도사업소) → 통보			
수수료	없 음			
심사기준 및 기타				

저수조청소업 폐업 **신고서**
 휴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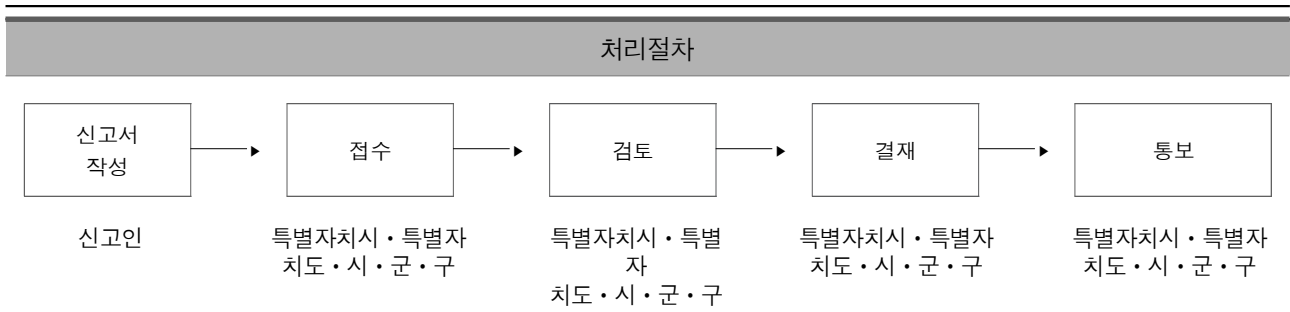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수	7일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사업장	상호	전화번호	
	소재지		
폐업(휴업) 연월일			
휴업 기간			
폐업 또는 휴업 사유			

「수도법」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(휴업)을 신고합니다.

 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m²]

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(변경설치) 신청

사무내용	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 및 변경설치 신청			상 단
민원처리 부 서	수도사업소	접 수 처	수도사업소	
전화번호	061)860-6677	처리기간	7일	
관련법규	1. 먹는물관리법 제 8조의2(냉·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·관리) 2.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의2(냉·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·관리)			
구비서류	신고서			
업무처리 흐름도	○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·검토(수도사업소) → 필요시 현지확인 → 결재 → 신고증명서 발급			
수수료	없 음			
심사기준 및 기타	○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름 (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세부 사항 확인) 1. 냉·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장소 2. 냉·온수기 관리방법 3. 정수기 관리방법			

[]냉·온수기, []정수기 []설 치 신고서 []변경설치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7일	
신고인 (설치·관리자)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	생년월일	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)		전화번호		
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 건축물내역	다중이용시설 종류			소재지	
	설치장소 및 대수	설치장소			
		설치대수			
	관리주체				
변경내용	변경 전			변경 후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(변경설치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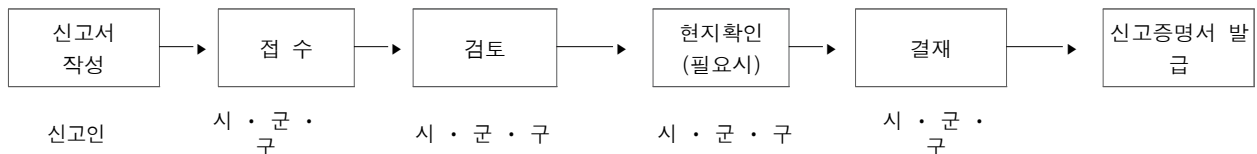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신청 (변경)신고

사무내용	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			상 단
민원처리 부 서	수도사업소	접 수 처	수도사업소(위생환경팀)	
전화번호	061)860-7827	처리기간	7일	
관련법규	1. 하수도법 제45조(분뇨수집운반업) 제 1항 2.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(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) 3.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5조(분뇨수집·운반업의 변경신고)			
구비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1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.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변경신고 :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(상호변경, 운반차량의 변경, 기술인력 변경, 대표자변경, 사무실 변경)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1. 상기 서류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 3.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			
업무처리 흐름도	○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·검토(수도사업소) →필요시 현지확인 결재 → 통지			
수수료	허가: 30,000원 변경: 없 음			
심사기준 및 기타				

분뇨수집 · 운반업 허가신청서
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 7일
신청 · 신고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
사무실 소재지 (전화번호:)

차고 소재지

변경내용

「하수도법」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.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	수수료 허가: 30,000원 변경: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.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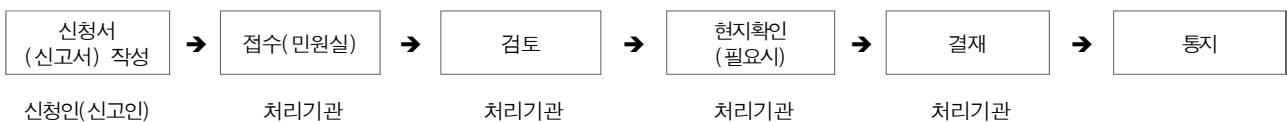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유의사항

1.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
 - 분노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
2.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
 - 가. 상호의 변경
 - 나. 운반차량의 변경
 - 다. 기술인력의 변경
 - 라. 대표자의 변경
 - 마. 사무실의 변경
3.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
 - 가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노 수집·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 - 나.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

분뇨수집·운반 사업계획서

사무내용	분뇨수집·운반 사업계획서			상 단
민원처리 부 서	수도사업소	접 수 처	수도사업소(위생환경팀)	
전화번호	061)860-7827	처리기간	30일	
관련법규	1. 하수도법 제45조(분뇨수집·운반업) 제2항 2.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6조(분뇨수집·운반 사업계획서 제출)			
구비서류	1.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서 2. 영업 예정 장소에서의 연간 수집·운반 예정량(청소예정구역 등 포함) 3.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			
업무처리 흐름도	○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·검토(수도사업소) → 필요시 현지확인 → 결재 → 통지			
수수료	없 음			
심사기준 및 기타				

분뇨수집 · 운반업 사업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제출인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)	

사무실 예정소재지 (전화번호 :)

변경내용

「하수도법」 제4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시설 ·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유의사항

1.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
분뇨수집 · 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
2.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가. 분뇨수집 · 운반업: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 · 운반 예정량(청소예정구역 등 포함)
나.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

처리절차

